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부산항만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119구조건의 원활한 양성·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소방정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과 같다.

②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 활동지원
4.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5. 소속 인력·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6.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제8조의2 앞에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을 삭제한다.

제8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제9조제2항 중 “3명”을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277”을 “28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4”를 “235”로 하며, 소방경 “57”을 “58”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1”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을 “1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9”를 “1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7”을 “28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4”를 “235”로 하며, 소방경 “60”을 “61”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1”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을 “1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9”를 “1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66”을 “49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2”를 “392”로 하며, 소방령 “23”을 “24”로 하고, 소방경 “39”를 “42”로 하며, 소방위 “62”를 “65”로 하고, 소방장 “72”를 “75”로 하며, 일반직 계 “84”를 “100”으로 한다.

별표 5 중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7”을 “3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21”을 “1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19구조견담당) “8”을 “9”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66”을 “49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2”를 “392”로 하며, 소방령 “23”을 “24”로 하고, 소방경 “40”을 “43”으로 하며, 소방위 “61”을 “64”로 하고, 소방장 “72”를 “75”로 하며, 일반직 계 “84”를 “100”으로 한다.

별표 5의4 중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7”을 “3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21”을 “1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8”을 “9”로 한다.

별표 6 3)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4)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5)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소방정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의2제1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영남119 특수구조대	부산항만 소방정대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화재예방국) ① ~ ③ (생략)	제4조(화재예방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생략)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u>
9. ~ 12. (생략)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u>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소방정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과 같다.</u>
	<u>②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에서의</u>

<u>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u> <u><신 설></u> <u>제8조의2 · 제8조의3 (생 략)</u>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u>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u> <u>2. 관할구역 유관기관 간 재난 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u> <u>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 활동지원</u> <u>4.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u> <u>5. 소속 인력 · 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 · 관리</u> <u>6.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u> <u><삭 제></u> <u>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u> <u>제8조의3 · 제8조의4 (현행 제8조의2 및 제8조의3과 같음)</u>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7	280	+3
소방공무원 계	234	235	+1
소방경	57	58	+1
일반직 계	39	41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 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	12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 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 ·	<u>9</u> · ·	<u>10</u> · ·	+1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7	280	+3
소방공무원 계	234	235	+1
소방경	60	61	+1
일반직 계	39	41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 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	12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 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 ·	<u>9</u> · ·	<u>10</u> · ·	+1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6	492	+26
소방공무원 계	382	392	+10
소방령	23	24	+1
소방경	39	42	+3
소방위	62	65	+3
소방장	72	75	+3
일반직 계	84	100	+16
전문경력관	27	36	+9
가군(항공조종담당)	<신 설>	6	+6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 전 문 경 력 관 나군(항공조종담당)	· <u>21</u>	· <u>12</u>	-9
· 전 문 경 력 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 <신 설>	· <u>6</u>	+6
전 문 경 력 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신 설>	<u>3</u>	+3
전 문 경 력 관 나군(119구조견담당)	<u>8</u>	<u>9</u>	+1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6	492	+26
소방공무원 계	382	392	+10
소방령	23	24	+1
소방경	40	43	+3
소방위	61	64	+3
소방장	72	75	+3
일반직 계	84	100	+16
전문경력관	27	36	+9
가군(항공조종담당)	<신 설>	6	+6
전 문 경 력 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 <u>21</u>	• <u>12</u>	-9
• <u>전문경력관</u> <u>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u>	• <u><신 설></u>	• <u>6</u>	+6
• <u>전문경력관</u> <u>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u>	• <u><신 설></u>	• <u>3</u>	+3
•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 <u>8</u>	• <u>9</u>	+1